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2023. 1. 19.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김정일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1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1월 18일

-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정일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도내 65세이상 노인 및 초 국민기초 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유공자,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도내 보건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선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

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확대(안 제5조)
 - (현행) 만 65세 이상 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유공자, 장애인
 - (변경) 65세 이상 노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유공자, 장애인
- 쏘 수급대상자로의 대상 확대에 따른 대리 신청 자격 변경(안 제10조)
 - (현행)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 대리 신청 가능
 - (변경)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, 후견인 대리 신청 가능

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30일 제정된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 료비 용자지원 조례」의 내용 중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대리 신청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5조는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(이하 “대상자” 라 함)를 확대 하려는 것임.
 - 현행 조례에서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 하여 사실상 조례에 따른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65세 이상 고령자로만 제한 하고 있는 반면,
 - 개정안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에서 질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대상자에 포함되었고,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

급자·차상위계층 및 장애인,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.

- 이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수가 현행 112,358명에서 440,549명으로 4배 정도 확대되었음.

※ 대상자 확대 : (현행) 112,358명 → (개정안)440,549명(증 328,191명)

현 행	개 정 안 * 중복인원 제거
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31,915명)	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
②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(10,311명)	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
③ 만 65세 이상 장애인(50,195명)	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
④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(19,937명)	④ 장애인(47,012명)
	⑤ 국가유공자(6,501명)

- 대상자의 확대는 충북도 내 질병 치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용자 지원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,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긍정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○ 안 제10조는 지원 신청에 있어 거동불편, 장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에 "신청인 본인의 후견인"을 추가한 것임.

- 후견인제도는 장애, 질병,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에 따른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가 없거나 대리 신청이 곤란한 경우, 「민법」상 성년·피성년 후견인 및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

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¹⁾등에 따른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,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대리 신청 자격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,
 -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.
- 다만,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1)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 제3조(후견인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.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만 65세 이상의 거주자”를 “거주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65세 이상인 자

제10조제2항 중 “거동불편”을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”으로, “본인이”를 “신청인 본인이”로, “본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가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
2. 신청인 본인의 직계 존·비속
3. 신청인 본인의 형제·자매
4. 신청인 본인의 후견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비 용자지원 신청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)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) ① <u>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</u>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5조(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) ① ----- --- <u>거주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65세 이상인 자</u></p> <p>2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신청방법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거동불편, 장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가</u>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제10조(신청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</u> ----- <u>신청인 본인</u>이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신청인 본인의 배우자</u></p> <p>2. <u>신청인 본인의 직계 존·비속</u></p> <p>3. <u>신청인 본인의 형제·자매</u></p> <p>4. <u>신청인 본인의 후견인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보건의료기본법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, 의약품,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,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5조(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·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440,549명(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)
 - * 65세 이상 노인(314,485), 기초생활수급자(46,638), 차상위계층(25,913), 국가유공자(6,501), 장애인(47,012)
- 대상수술 : 6개 수술
 - 삶의 질(임플란트 식립,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수술, 척추수술) 및 생명유지(심뇌혈관 수술)
 - 자기부담금 비용이 높고, 일상생활 영위에 꼭 필요한 수술
- 의료기관 : 12개소(종합병원급 의료기관) + 치과 병·의원
- 재원규모 : 125억원(농협 정책자금, 25억×5년) * 道 채무보증
- 도비소요액 : 51억원
- 대출한도 : 1인 50~300만원 / 3년간 무이자 상환
- 사업량 : 연 830명^{최소} ~ 5,000명^{최대}
- 사업내용 :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지원 대상자의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
- 금융기관 대출자금 미상환금에 대한 보전비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(지원내용) 및 제11조(채무보증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준 : 최근 금융권의 저소득 대상 대출 연체율 및 추심 환수율
- 추계기간 : 향후 5년(2023년~2027년)

나. 추계 결과

○ 산출금액

- (세입) 385백만원 ※ 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추심 환수율 10%
- (세출) 5,160백만원 [미상환금 등 3,860 / 이차보전금 1,300]

○ 산출과정 = (' 23) 922백만원 [(미상환금^①+ 연체이자^②) + 이차보전금^③]

- ① 미상환금 보전 : 750,000천원(미상환율 30%)
- ② 연체이자 등 보전 : 22,346천원(지연이자+연체이자)
- ③ 이차보전금 : 150,000천원(이율 6%)

○ 재원조달 방법 : 도비 100%

다. 추계사유

- 신규사업으로 추계치가 없어 과도한 예산추계로 예산운용 차질을 방지하고자 시범사업 시행결과를 통해 적정 예산 추가편성 예정

5. 연도별 비용추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세 입	385	77	77	77	77	77
미상환금 환수	385	77	77	77	77	77
세 출	5,160	922	1,022	1,072	1,072	1,072
의료비 미상환금 지원	3,860	772	772	772	772	772
의료비 이차보전금	1,300	150	250	300	300	300

※ 상환기간(3년)에 따른 이차보전금 누계 반영